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92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나연(기소), 박우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재홍(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고정150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던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이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정상이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30

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

 판사 김성수 _____

 판사 이상균 _____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50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김지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지광(국선)
판 결 선 고 2025.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부터 2024. 3. 16.까지 피해자 B에게 약 369만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빌려 일자불상경 불상의
금액을 변제한 채무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관계이자 금전적으로 채권·채무 거래
관계에 있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4. 3. 20. 영천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좌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가리자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을 4~5회 정도 폭행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D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경모 _____